강릉역 경남아너스빌 더 센트로(조합원 취소분) 입주자모집공고

청약Home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 청약Home 앱 설치 바로가기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33)648-5033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25.6.26. 이전부터 계속 거주)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6개월 미만 계속 거주자 및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없음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 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12.26.(금)	25.12.31.(수)	26.01.02.(금)	26.01.08.(목)	26.01.09.(금) ~ 26.01.18.(일)	26.01.19.(월) ~ 26.01.21.(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 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1순위(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청약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APT, 불법행위재공급, 규제지역 무순위)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 제1항에 따라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동호수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 1순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시 추첨)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 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시 함께 발표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s://cafe.daum.net/centralpark517)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해외체류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을 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 초과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이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긴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완료시 신청가능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시 기존 청약통장 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입주자모집공고일 포함) 종전 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주택법」제65조 및「주민등록법」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2.19.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6조에 따라「주택법」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법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APT	O						

2 단지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12.26.(금)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강릉시 6개월 이상 거주자(25.6.26. 이전부터 계속 거주)가 우선합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분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 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12.31.(수)	26.01.02.(금)	26.01.08.(목)	26.01.09.(금) ~ 26.01.18.(일)	26.01.19.(월) ~ 26.01.21.(수)
방법	(PC·모바일) 청약홈 (09:00 ~ 17:30)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PC·모바일) 청약홈	강릉역 경남아너스빌 더센트로 조합사무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명륜로 85번지)	

※ 정보취약계층에 한해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청약 신청취소는 청약신청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비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강릉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엑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없음

3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주택과-36869호(2025.12.2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명륜로 85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3층, 지상24층 8개동 총 456세대 중 **조합원 취소분 1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현재 입주 가능(2026년 1월)**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민영 주택	**2025000640**	01	59.6657A	59A	59.6657	22.8187	82.4844	57.6899	140.1743	36.9692	3	3
		02	59.9458B	59B	59.9458	25.0032	84.9490	57.9607	142.9097	37.1428	9	9
		03	84.9907	84	84.9907	31.1560	116.1467	82.1763	198.3230	52.6607	4	4
	합 계										16	16

-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표기 방식(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 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하기 바랍니다.
- 주택 공급 신청시 [주택형] 또는 [형]란은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니 평형으로 오해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 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 × 0.3025 또는 공급면적(㎡) ÷ 3.3058)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관리사무소 등 주민공동시설, 보안 및 설비관련시설, 지하주차장, 펌프실, 전기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면적표현은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제곱미터(㎡)로 표현되며(면적산출 근거에 의해 소수점 5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 기타 공용면적을 세대별로 분배할 경우 주거 건용면적 비율 기준으로 소수점 4째 자리까지 산출 후 전체 총면적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강제 조정하여 오차를 최소화 합니다.
-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 아파트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 원

주택형	약식 표기	동별 (라인별)	층구분	공급 세대수	분양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59.6657A	59A	101동 3호 102동 1호 105동 1호	9층 ~ 11층	1	59,271,000	354,899,000	414,170,000	41,417,000	372,753,000
			12층 ~ 15층	1	59,271,000	359,889,000	419,160,000	41,916,000	377,244,000
			16층 ~	1	59,271,000	364,879,000	424,150,000	42,415,000	381,735,000
59.9458B	59B	101동 4호,5호 103동 2호,3호 105동 2호 107동 1호	~ 8층	2	59,484,000	361,832,000	421,316,000	42,131,600	379,184,400
			9층 ~ 11층	4	59,484,000	366,970,000	426,454,000	42,645,400	383,808,600
			12층 ~ 15층	1	59,484,000	372,108,000	431,592,000	43,159,200	388,432,800
			16층 ~	2	59,484,000	377,246,000	436,730,000	43,673,000	393,057,000
84.9907	84	105동 4호 106동 1호 107동 4호	~ 8층	2	86,752,000	489,380,000	576,132,000	57,613,200	518,518,800
			16층~	2	86,752,000	510,458,000	597,210,000	59,721,000	537,489,000

■ 추가선택품목 선택 세대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VAT 포함)

약식표기	동	호수	품목	설치위치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59A	101	903	엔지니어드스톤 벽체 및 상판	주방	1,860,000	186,000	1,674,000
			펜트리	시스템선반	320,000	32,000	288,000
			하이브리드 쿡탑	주방	930,000	93,000	837,000
59B	103	1903	엔지니어드스톤 벽체 및 상판	주방	1,310,000	131,000	1,179,000
			폴리싱 타일	거실/주방	1,310,000	131,000	1,179,000
			하이브리드 쿡탑	주방	930,000	93,000	837,000
			분리형 비데	욕실1(공용)	120,000	12,000	108,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통합취득세가 미포함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 일부 세대의 추가선택품목의 경우 조합원 추가선택품목으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2.17.)와 동일한 공급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의거 계약금, 잔금으로 구분하였으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 잔금납부와 관련하여 대출금융기관 알선 등은 없으며, 계약자는 이를 인지하고 지정한 일자에 분양대금을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준공 이후에 공급됨에 따라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계약 당시 선택되었던 발코니 확장 및 추가선택품목 옵션에 따라 자재의 주문·제작 및 공사가 완료된 관계로, 청약자는 상기 발코니 미확장을 선택할 수 없으며 일부 세대의 추가선택품목 공급대금을 추가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이 불가하다는 점을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강릉시에 거주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분

청약신청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순위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강릉시 및 강원특별자치도)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400만원	6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700만원	1,0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000만원	1,500만원

※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강릉시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강릉시 6개월 미만 거주자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거주자)
- ②가점 :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적용비율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 가점 산정기준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이상 ~ 9년미만	18
			1년 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20
			1년이상 ~ 2년미만	4	10년이상 ~ 11년미만	22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2년이상 ~ 3년미만	6	11년이상 ~ 12년미만	24
			3년이상 ~ 4년미만	8	12년이상 ~ 13년미만	26
			4년이상 ~ 5년미만	10	13년이상 ~ 14년미만	28
			5년이상 ~ 6년미만	12	14년이상 ~ 15년미만	30
			6년이상 ~ 7년미만	14	15년이상	32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 4) 확인방법 : 가) 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라)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②부양가족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재혼배우자의 자녀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만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5) 확인방법 : 가) 주민등록표등·초본 나) 가족관계증명서 다)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 -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비고	1순위 가점제 청약시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1순위 가점제 당첨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5 청약신청 및 당첨자 발표 안내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인증서 로그인→청약신청→APT→신청유형 및 주택명선택→청약자격 등 입력→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인증서 로그인→청약신청→APT→청약취소→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청약신청 취소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합니다.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방문을 통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현장 접수시 필요서류

<table>
<tr><th colspan="3">필요서류</th></tr>
<tr><td>본인 신청 시</td><td colspan="2">-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서명</td></tr>
<tr><td rowspan="3">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td><td colspan="2">-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td></tr>
<tr><td>인감증명 방식</td><td>본인서명확인 방식</td></tr>
<tr><td>-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 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접수 장소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d>-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able>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 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제공 요구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 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기관(정보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팝업 → 본인정보 제3자제공 요구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 신청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등록 방법 : 청약자격 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 / 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당첨자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 조회 - **조회기간** : **2**026.01.08.(목) ~ 2026.01.17.(토)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 사항 확인 또는 ② 청약소통방 → APT 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 내역 확인 가능 - 당첨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1.08.(목) 08:00(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신환경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확인 구비서류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2조제2항(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택의 공급신청시에 구비서류의 제출을 생략한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기전에 당첨예정자로부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아 세대주, 세대원 및 해당 거주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사전 서류제출기간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자격 검토후 적격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추첨일정 등에 대한 통보는 청약시 기재된 연락처를 기준으로 통보함에 따라, 연락처가 변경되거나 착오기재한 분은 본인의 연락처(주소,전화번호)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을 경우 주소불명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의 모든 제반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자격확인 서류제출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요구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미제출'로 인한 계약체결 불가등 불이익이 있을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입주자로 선정되지않은 자의 서류는 사업주체에서 6개월간 보관후 일괄 파기합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동포,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할 예정입니다.

※ 예비입주자중에서 최초 동·호수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동호를 배정받은자는 공급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청약통장 재사용 불가등이 적용됨)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등(분리세대배우자 및 그 세대원포함)는 국토교통부에 무주택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계약체결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입금후 무통장입금영수증을 계약시 제출하여야하며, 분양사무소에서 계약금(현금또는수표)수납은 불가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공통서류	O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조합사무실에 비치
	O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통(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 발급용'에 한함. -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경우, 발금용도 및 제출처 확인 후 발급받으시기 바람 • 본인 신청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가능, 제3자대리신청 및 대리계약은 불가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세대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 초과 해외체류 여부 확인 • 세대원 중 청약자만 생업상(단신부임) 헤외 체류중일 경우 국내 거주자로 인정 •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출입국 기록여부를 "Y"로 설정하여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출입국 기록 전체 발급,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O	복무확인서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자격으로 신청한 경우
		O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청약자의 친자녀가 아닌 자녀)로서 청약자(당첨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새대원 포함)를 포함하여 "상세"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 부임)		O	해외체류 관련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8항에 의거 세대원 중 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 계속하여 90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생업 종사중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국내기업 및 기관 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재직증명서 등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 서류 모두 제출) ① 비자발급 내역 /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 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 공증 첨부 필수
		O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 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 부임 인정 불가
		O	출입국사실에 관한 증명	배우자 및 세대원	• 세대원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지 않은 미성년 자녀 전원의 해외체류 유무를 확인 ※ 기록 대조일을 제출대상자의 생년월일 ~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개명한 경우, 개명한 시점에 따라 개명전

					출입국사실을 추가 제출할 수 있음)
가점제당첨자		O	청약통장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발급 > 청약통장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가입은행) 창구방문 > 청약통장 가입 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조합사무실 비치
		O	당첨사실 확인서	배우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부양직계존속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O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피부양직계비속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모집공고일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발급)	피부양직계비속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발급)	피부양직계비속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직계존속과의 관계 및 피부양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사실 확인
		O	주민등록표초본 (전체포함발급)	피부양직계비속	・주민등록표상 청약자와 만30세 이상 직계비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O	혼인관계증명서 (전체포함발급)	본인직계비속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미성년자녀가 만18세로 미성년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O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본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무허가건물확인서(「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3조제8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임을 확인하는 문구 포함분에 한하여 인정)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철거예정증명서,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 사업주체가 증빙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O	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무효확인서 등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본인 외 모두 제3자)	O		위임장	본인	・조합사무실 비치, 당첨자의 인감이 날인 필요
	O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본인 발급용) ※ 대리인 접수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정 불가
	O		신분증 및 도장	대리인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2020.12.21. 이후 신규 발급분은 제외) ※ 2020.12.21. 이후 신규발급 여권은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본인 여권과 함께 제출 [재외동포 : 국내거소사실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7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 대상자	비고
당첨자 계약체결	• 2026. 01 19(월) ~ 2026. 01. 21(수) 3일간(10:00~17:00)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음	• 예비입주자 :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
장소	• 강릉역 경남아너스빌 더센트로 조합사무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명륜로 85번지)	

※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당첨자로 관리,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 대해서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급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분양대금	경남은행	207-0133-9689-03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 분양대금은 약정된 계약금 및 잔금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동 · 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입금증은 계약체결시 견본주택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서 현금수납 불가)
※ 무통장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영수증으로 갈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예시 : 101동 101호 홍길동 계약자 → '1-101홍길동'
※ 단,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착오입금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납부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광주은행	1107-021-312665	경남기업 주식회사

•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상기 납부계좌로 반드시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견본주택 현금수납 불가) 하시기 바라며 입금 시 계약할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 101동 1001호 홍길동→'1011001홍길동'. (단,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사업주체에 환불신청서를 제출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음)
• **추가선택품목(옵션)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는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고 이체 바라며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착오 입금에 대한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정된 추가선택품목의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계약시 구비서류**

구분	제출유형		구비서류	발급기준	서류제출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필수 해당자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계약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자격검증서류	-	• 당첨자 자격검증서류 일체(사전 제출기간에 제출자는 제외)
		○	추가 개별통지서류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인감증명서	본인	• 용도에「아파트계약용」으로 직접 기재, 본인발급에 한함. 본인계약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대리인 접수 불가)로 대체 가능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시 서명으로 대체
	○		계약금입금증	-	• 무통장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이체 영수증 ※ 현장수납 불가.
	○		부동산실거래신고서		• 조합사무실 비치
	○		수입인지 (계약자 부담분)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 수입인지 구매처 : [오프라인] 우체국, 은행(해당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온라인] 전자수입인지(e-revenuestamp.or.kr) 사이트에서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조합사무실 비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제출)	○		인감증명서	본인	※ 본인 외 모두 제3자로 간주함 - 인감증명서 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함 -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장소 비치)
	○		위임장	-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청약신청 및 계약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위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단지와 세대의 시설물 등에 대한 추가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전 실제 계약대상 세대를 방문하시어 세대내부, 조망 등을 확인하시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타사 또는 시공사의 타분양 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준공도면 / 완공된 세대 내외부에서 제시한 사항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분양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하자의 범위 및 담보책임기간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37조 및 동법 시행령 36조,37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 서류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합니다.
  - 정당 당첨자가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합니다.
  - 지정계약기간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당첨 소명기간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관리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 예금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자의 청약예금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은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거래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자가 있는 경우에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소명기간이 지난 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합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후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위약금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용합니다.

■ 부적격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2조제3항 및 제57조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자의 명단을 당첨자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향후 공급신청하려는 지역을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6개월, 위축지역 3개월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58조제4항에 따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격당첨자를 당첨자로 인정한다.(동법 제57조제7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① 같은 청약순위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순위의 자격을 갖춘자

② 같은 청약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가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함) 또는 공급순차별 자격이 해당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점수 또는 자격이상에 해당하는 자

■ 투기적발자처벌(「주택법」제65조및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청약통장 및 주택분양권을 불법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금액)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56조에 따라 「주택법」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의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위반 여부확인등을 위한 개인정보요구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주택의 분양권이 제3자에게 전매된 경우에도 공급계약취소등에 관한 주택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 전자수입인지세납부관련안내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소유권이전에관한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 체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서에 기재된 실제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소에 제출하기로한 계약서에 전자수입인지(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계약서 체결과 관련한 인지세는 계약체결시 계약자 및 사업주체가 연대하여 균등하게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정부 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사이트(www.e-revenuestamp.or.kr/) 또는 취급 금융기관(우체국,은행)에서 발급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액(기재금액기준) : 1억원초과 ~ 10억원이하 15만원, 10억초과 35만원

※ 계약체결이후 부적격당첨, 공급질서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대출안내

- **본 아파트는 2025.10.29. 공동주택 사용검사를 득한 사업장으로 사업주체등은 별도로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 잔금에 대한 대출은 계약자가 개별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수도 있으므로 계약자는 금융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납부에 대한 모든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개인의 사정에 따른 대출금융기관의 대출축소 및 대출불가한 경우에도 잔금에 대해서는 계약자가 직접납부하여야 하며(미납시 연체료가 부과됨.),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잔금대출조건등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을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내에 납부하여야 함. 특히 청약접수전 본인의 신용상태 및 대출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대출에 필요한 제반경비(보증수수료,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부담해야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대출이 불가하거나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잔금을 본인이 직접납부(이 경우 사업주체는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별도로 통보할 의무가 없으며, 미납시 연체료 가산됩니다.)하여야 하며, 대출불가 사유로 인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잔금의 선납할인은 없으며 미납부로 인한 지연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8 참고사항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4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후「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 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 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 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 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주택법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로서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주거전용 면적85제곱미터이하로서 별표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주택법시행령」제2조 각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2)「주택법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주택법시행령」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재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함)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 받지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주택공급에관한규칙」별표1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1월1일부터 2024년12월31일까지 취득(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시행령」제2조각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9 기타 계약자 안내

■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제7조 제3항

구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 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1호)	단열 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 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 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 보일러(다목)	적용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최소소비효율기준 만족 제품(0.7kW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 송풍기용 제외)
	고효율 급수펌프(마목)	적용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제품 또는 KS규격에서 정해진 기준효율의 1.12배 이상 제품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 설치되는 수전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바목)	적용	세대 내 각 실별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고효율 변압기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라목)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 공용화장실에 설치

■ **분양보증**

강릉역 경남아너스빌 더센트로는 2025년 10월 29일 강릉시청으로부터 사용검사를 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 아파트로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이 필요하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 **공동주택 사용검사 확인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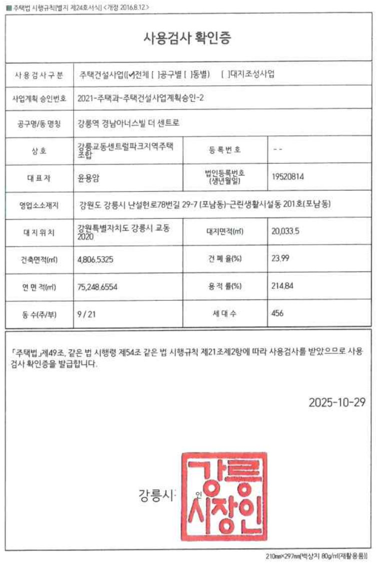
■ 주택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서식] <개정 2016.8.12>

사용검사 확인증

사용검사구분	주택건설사업([✓]전체 [ ]공구별 [ ]동별) [ ]대지조성사업		
사업계획 승인번호	2021-주택과-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2		
공구명/동 명칭	강릉역 경남아너스빌 더 센트로		
상호	강릉교동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	등록번호	- -
대표자	윤용암	법인등록번호 (생년월일)	19520814
영업소소재지	강원도 강릉시 난설헌로78번길 29-7 (포남동)-근린생활시설동 201호(포남동)		
대지위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교동 2020	대지면적(㎡)	20,033.5
건축면적(㎡)	4,806.5325	건폐율(%)	23.99
연면적(㎡)	75,248.6554	용적률(%)	214.84
동 수(주/부)	9 / 21	세대수	456

「주택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았으므로 사용검사 확인증을 발급합니다.

2025-10-29

강릉시 (인) 강릉시장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 관련 고지사항**

-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이하"자금관리 대리사무사"라 한다)는 분양수입금 등의 자금관리를 담당하며,(수분양자의 중도해지에 의한 환불금 등)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 총액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위해 분양수입금을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납부하기로 한다.
-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가 본 사업의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 반환 의무는 사업주체("매도인")"가 부담함을 확인하며, 향후 분양대금 반환사유가 발생하여 본 사업의 자금관리계좌 잔액이 분양대금 반환액보다 적을 경우 그 부족분에 대한 자금조달 의무는 "사업주체("매도인")"의 책임으로 이행함을 확인하다.
- 분양대금반환과 관련하여 매수인인 "수분양자"는 "자금관리 대리사무사"에게 분양대금반환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고, 사업주체("매도인")가 모든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

■ **사업주체, 자금관리대리사무사 및 시공회사**

구분	사업주체	자금관리대리사무사	시공사
상호	강릉교동센트럴파크지역주택조합	코리아신탁 주식회사	경남기업 주식회사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난설헌로78번길 29-7, 201호(포남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08, 10층(대치동)	충청남도 아산시 청운로176번길 25, 2층 (권곡동)
법인등록번호	602-82-66949	110111-2937831	110111-0008262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키즈까페, 맘스테이션, 휘트니스센터, 게스트하우스 등이며, 내부시설물 및 내부시설물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등은 실 시공시 최초 계획과는 다르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전체 주차대수는 714대(공동주택 684대, 판매시설 30대)로 일반주차·여성전용주차·전기자동차주차·장애인주차가 지상 및 지하주차장으로, 판매시설 전용 일반주차·여성전용·장애인주차장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이 완료된 아파트로서 청약 전 현장방문 등으로 주변여건을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청약 당첨자에 한해 계약 전 세대 방문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초 분양 이후 견본주택, 설계도서 등의 변경사항을 입주자 안내문으로 기통지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지 위치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명륜로 85번지**

■ **분양 문의 : ☎ 033) 648 - 5033**

※ 청약자는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당사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 및 이 공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 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 계약서가 우선합니다.)